



교육인적자원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입학처장)
(경유)

제목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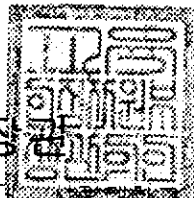
약학대학의 수업연한 확대(4년→6년), 재입학 여석 산정 기준 변경, 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정원 감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2006.1.13, 대통령령 제19278호)되어 불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 방송·통신대학과 외국대학간 교육과정의 공동운영 근거 마련(영 제13조제1호의2 신설)
- ◇ 약학대학의 수업연한을 4년에서 6년으로 확대(영 제25조제2항 신설)
- ◇ 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정원의 감축 등(영 제29조제2항)
- ◇ 약학대학에의 편입학 등에 대한 허가(영 제29조제4항 신설)
- ◇ 총정원의 범위 안에서 재입학 허가(영 제29조의2 신설) 등

- 불임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관보 제16171호, 2006.1.13) 1부
2.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문별 설명자료 1부, 끝.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수신자 국립대학교, 국립대학교2, 국립산업대, 국립교육대, 사립대학교, 사립산업대, 사립산업대2, 대학원대학교, 공립대학교, 기술대학, 공립대학교2, 국립전문대학1, 국립전문대학2, 공립전문대학1, 공립전문대학2, 각종학교, 각실과

★교육행정주사 최상부 교육행정사무관 김대성 대학정책과장 01/18 박춘란

협조자

시행 대학정책과-274 (2006.01.18.) 접수 아주대학교-@N ()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 http://www.moe.go.kr

전화 02)2100-6494 /전송 02)2100-6504 / choisb@moe.go.kr / 공개

제29조제4항을 동조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대학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약학대학(한약학과를 제외한다)에 편입학하거나 모집단위를 옮기는 것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2년 이상 수료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하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재입학)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이 정하는 계열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학생정원(이하 "총정원"이라 한다)의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집단위별로 재입학을 허가한다. 다만,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에는 대학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은 주간과 야간, 본교와 분교 및 정원

의 내외로 구분한다.

제30조제3항제2호중 “부모”를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로 한다.

제64조 전단중 “제28조제2항”을 “제19조·제28조제2항”으로, “학생의 모집단위”를 “학생의 전공이수, 모집단위”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제3호 중 의과대학의 학사편입학자에 대한 별도정원인정 제외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제2항, 제28조제5항, 제29조제2항 후단 중 의과대학 정원 외 입학비율에 관한 개정규정 및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학의 약학대학 재적생의 수업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대학의 약학대학에 재적중인 자의 수업연한에 대하여는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전문대학원의 설치에 따라 폐지되는 학과의 재입학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원이 설치됨에 따라 입학정원에 대한 배정이 중지되는 의예과·치의예과·의학과 또는 치의학과에 대학의 장이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9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학과가 존속하는 동안은 모집단위 별 입학정원이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유

약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약학대학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확대하여 기초·소양 교육은 2년으로 전공교육은 4년으로 하는 한편, 고등교육에 대한 국민의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학사운영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이 재입학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총정원의 범위 안에서 하도록 하고, 방송·통신대학도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 대학과 외국대학간 교육과정의 공동운영 근거 마련(영 제13조제1호의2 신설)

(1) 최근 한국방송통신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교육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등 방송·통신대학의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이 국제화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방송·통신 대학의 경우에도 전문학사·학사학위과정 및 대학원 교육과정을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교육인적자원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공포 관련 재입학 설명자료 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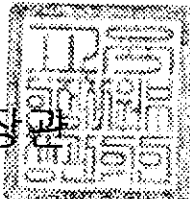
1. 우리부는 모집단위별 선발에 따른 재입학 기회의 제한 문제를 개선하고, 고등교육기회를 보다 폭넓게 부여하기 위하여 “학칙이 정하는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총정원)”의 범위내에서 재입학을 가능토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05.1.13. 공포)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재입학 여석산정과 관련한 설명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 하오니 각 대학에서는 재입학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설명자료 1부. 끝.

신			지	
일	일자	2006. 2. 13	시	
수	서관	시	처	장
	번호	443	장	
	처리과		장	
	담당자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수신자 공립대학교, 국립대학교, 국립산업대, 사립대학교, 사립산업대, 각종학교, 기술대학

*교육행정주사보 정봉출 교육행정사무관 박승렬 대학학두과장 박응수 대학지원국장 02/10 김화진

협조자 대학정책과장 박춘란

시행 대학학두과-923 (2006. 02. 10.) 접수 아주대학교-@N ()

우 110-760 서울특별시 중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 http://www.moe.go.kr

전화 02)2100-6515 /전송 02)2100-6524 / jbc76@moe.go.kr / 공개

□ 내용

- 재입학 허가년도를 기준으로 모집단위별로 1~4학년 학생중 대학을 떠난 제적자 총수에서 다시 대학에 들어오거나 들어올 편입, 재입학자 총수를 제외한 인원만큼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
- 여석산정은 직전학기 또는 직전 학년도의 재적생 변동상황 보고 (4.1, 10.1자)에 명시된 제적자를 기준으로 산정
- ☞ 고등교육법시행령 : 대학의 장은 학생정원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안에서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을 허가('98.2.24자 제정)

◆ 개정

□ 산정원칙

- 재입학 허가년도를 기준으로 1~4학년 학생중 대학을 떠난 제적자 총수에서 다시 대학에 들어오거나 들어올 편입, 재입학자 총수를 제외한 인원만큼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
- 여석산정은 직전학기 또는 직전 학년도의 재적생 변동상황 보고 (4.1, 10.1자)에 명시된 제적자를 기준으로 산정(다만, 기존과 달리 여석산정시 학년별, 모집단위별로 구분하지 않음)
- 예시) A학과의 3학년 제적자(직전학기) 1명 여석 발생시 B학과 1학년 재입학 여석으로 사용 가능
- 2006학년도부터 편입학 여석산정시 교원확보율 적용으로 인하여 당초 제적생수보다 충원하지 못하는 인원(1,2학년)은 재입학 여석으로 사용 가능

예) 1,2학년 총제적자수가 30명이고(A학과 10명, B학과 8명, C학과 5명, D학과 7명), 교수확보율이 68%인 경우, 편입학 여석은 23명임($30\text{명} \times \text{산정비율 } 75\% = 22.5\text{명}$)

☞ 1,2학년 총제적자수 대비 충원하지 못한 7명은 재입학으로 충원 가능

- 정원외의 경우는 총정원이라는 개념이 없으므로 정원외 제적생이 발생시 그 인원만큼 재입학이 가능(다만, 기존과 달리 A학과의 정원외 제적생 여석을 B학과의 정원외 재입학 여석으로 사용 가능)

예시)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A학과에 입학한 학생이 제적 처리되어 재입학 여석이 발생한 경우, 이를 B학과의 농어촌 특별전형 재입학 여석으로 사용 가능

※ 농어촌 특별전형 여석을 재외국민 특별전형, 실업계 특별전형 여석 등으로 사용할 수는 없음

※ 신·구 변경사항 요약

구분	종전	개선
모집단위	특정 모집단위 여석이 있을때 가능	전체에 여석이 있을때 이를 당해 모집단위 여석으로 사용 가능
학년구분	당해학년 여석은 당해학년 재입학 여석으로 사용	타학년 여석을 당해학년 여석으로 사용 가능
여석산정기준	동 일	

< 주의사항 >

※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정원내, 정원외)의 경우는 <기존>의 산정원칙과 같이 모집단위별 제적자수(입학정원의 범위내)에 따라 산정(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 단서)

※ 제29조의2 제2항에 의거 학생을 재입학 허가하더라도 A학과에 재학중 제적된 학생을 B학과로 재입학허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님(제29조의2 제2항 단서에 의거,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는 예외)

※ 제29조의2 제3항에 의거 재입학 여석은 주간과 야간, 본교와 분교, 정원내·외로 구분하여 운영



교육인적자원부



수신처 :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 정원외 재입학 여석산정 기준 조정 통보

1. 관련 : 대학학무과-923(2006.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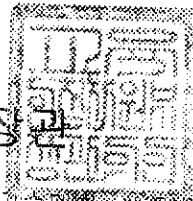
안 위 대호에 의거 각 대학에 통보한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공포에 따른 재입학 여석산정 기준과 관련하여, 정원외 재입학 여석산정 기준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 통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정 내용

구분	기 통보	조정
정원외 재입학 여석산정 기준	농어촌 특별전형 여석을 재외국민 특별전형, 실업계 특별전형 여석 등으로 사용할 수는 없음	정원의 재입학 여석 발생시 선발 유형에 관계없이 그 인원만큼 재입학이 가능

나. 사유 : 대학 제적자의 재입학 기회 확대. 끝.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수신처 : 서울대학교, 공립대학교, 국립대학교, 국립산업대, 기술대학, 자립대학교, 사립대학교

*교육행정지원처 : 송봉운 / 교육행정지원처 : 박승렬 / 대학학무과장 : 이기봉 / 대학지원처 : 권영 / 05/19 김화진

발주처

시행 : 교육인적자원부 93465 (2006.05.19.) 접수 : 아주대학교-@N ()

우 : 110-701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로 110-70 정보증광청사 / http://www.moe.go.kr

전화 : 02)2100-6515 / 전송 : 02)2100-6524 / bc76@moe.go.kr / 공개